

건설시장개방과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관련제도 개선방안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개방과 함께 국내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제도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건설사, 진출사례 활발예상

1. 건설시장개방내용

가. 건설시장개방협상의 타결

1993년 12월에 최종 타결된 바 있는 우루파이라운드(UR)건설시장개방 협상에서는 민간건설시장이 서비스협상에서, 공공건설시장의 경우 GATT/정부조달협상에서 논의된 바 있었다.

(1) 서비스협상과 타결과정

민간서비스부문 교역확대를 위하여 각국 시장개방과 교역 장벽의 해소를 목적으로 1986년 시작되었던 서비스협상은 당초 '90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코자 하였으나 타결시한이 '92년 말로 연기되는 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93년초 G7정상회담 이후 급진전 되어 최종적으로 '93년 12월 15일 타결에 이르렀다.

(2) 정부조달협상

정부조달협상은 우루파이라운드의 바로 전 다

자간협상인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는 92년도부터 신규 회원국으로 참여해온 바 있다.

우루파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함께 정부조달협상도 93년 12월 15일 타결되었다.

UR협상의 종결을 계기로 상설기구의 성격보다는 협정의 성격이 강하였던 GATT가 발전적으

우루파이라운드 서비스협상 타결과정

날짜	과정
1986. 9	우루파이 각료선언으로 협상 착수
1990. 7	서비스 일반협정 초안 작성
1991. 1	우리나라 개방계획 제출
1991. 12	던켈 GATT 사무총장 직원의 최종 서비스
1993. 8	수정양허안 제출
1993. 10	최종양허안 제출
1993. 12	최종타결

정부조달협상 타결과정

날짜	과정
1979.	GATT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협정체정 추진
1981. 1	협정발효(우리나라 미참가)
1987.	확장협상 추진
1990. 1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가입추진방침 결정
1991.12	정부조달협정문 의정안 배포
1992. 4	건설분야 개방계획안 확정(대외협력위의 결)
1992. 5	우리나라 개방계획 GATT 사무국에 제출
1992.12	제1차 양허협상 개최
1993. 6~11	5차례에 걸쳐 비공식 실무회의 및 양허협상 개최
1993.11	제2차 양허안 제출
1993.12	최종타결

로 해체되면서 국제무역기구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시장의 개방내용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일반건설	1) Unbound *(단 CPC 5111은 제한 없음) 2) 없음 3) - 지사는 허용되지 않음 - '96. 1. 1부터 지사가 허용됨 - 면허는 1년마다 발급됨 - 단일계약으로 도급한도제도 있음 - 하도급의무제도가 있음 4) 전문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1) Unbound *(단 CPC 5111은 제한 없음) 2) 없음 3) 없음
전문건설	1) Unbound * 2) 없음 3) - 국내 기존면허업체와 합작투자만 허용됨 - '96. 1. 1부터 자회사 설립허용 - 면허는 1년마다 발급됨 - 단일계약의 도급한도제도 있음 4) 전문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1) Unbound * 2) 없음 3) 없음

나. 우리나라의 건설시장개방내용

우루과이아운드(UR)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의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장개방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1) 건설서비스시장 개방내용

우루과이아운드 건설서비스협상에서는 일반건설서비스외에 관련분야로서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장비임대 및 부동산중개업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최종양허안에서는 8개 분야 78개 업종이 양허되었는데 건설분야의 경우 '94년 1월 1일부터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의 일반건설서비스업 종에 외국건설회사의 지사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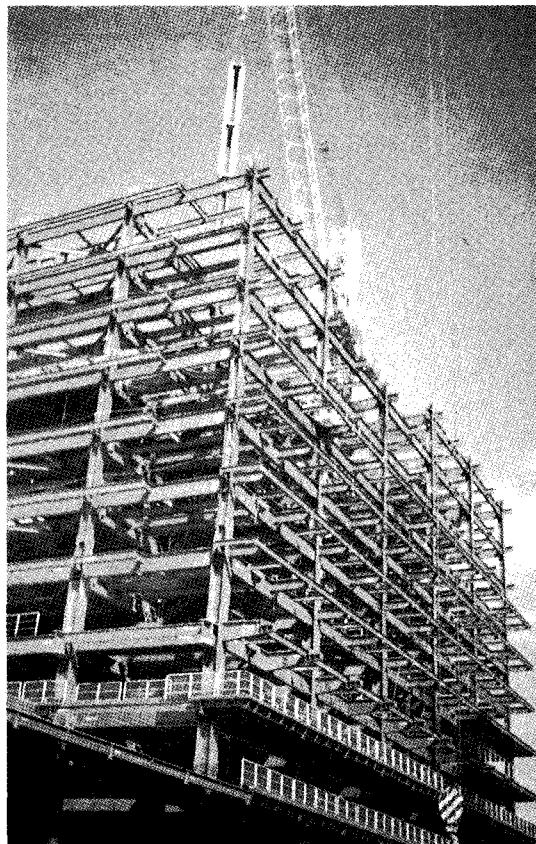
전문건설서비스의 경우는 일반건설서비스보다 각각 2년의 시차를 두고 '96년부터 외국건설회사의 100% 단독출자를 허용하고 자회사설립허가는 '98년부터 내주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 양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6
2차대전 이후 전후 부흥을 위한 유럽 제국간의 상호협력과정에서 시작된 지역적 경제통합은 현재 그 수가 30여개에 가맹국 수는 12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된 상태의 수직적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77

- 주 : 1) 국경간 서비스공급(cross border supply) : 예)
 외국소재 은행에의 예금가입
 2) 해외소식(consumption abroad) : 예) 해외관광,
 해외유학 등(소비자의 이동)
 3) 상업적주재(commercial presence) : 예) 외국 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자본의 이동)
 4)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예) 서비스공급인력의 현지주체(노동의 이동)
 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5316* : CPC 5136중 발전시설공사 제외
 5136** : CPC 5136중 발전시설 공사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는 각국마다 상이한 서비스분류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GATT사무국이 작성한 업종분류표를 말한다. 이에 따른 건설업(Division 51Construction Work)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511	Pre-erection work at construction sites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s
513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s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516	Installation work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518	Renting services related to equipment for construction or demolition of buildings or civil engineering works, with operator

우리나라 분류에 의하면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마무리 공사, 기타 서비스 등 5개 전업종이 개방된 것이며 미국, EC, 일본, 카나다 중국 등 주요국도 건설 5개 전업종을 양허하고 있다. 서비스의 모든 양허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제한사항으로는 외국인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 외국인 상업적 주재(자

회사, 합작회사, 지사, 사무소)에 대한 제한,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 서비스 교역에 수반되어 이동이 허용되는 인력의 범위에 대한 제한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최혜국대우의 면제목록에는 컴퓨터 예약서비스(CRS)와 금융분야의 미래자유화 조치를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우에는 '96년부터 한국건

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 서비스공급을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 건설기계 및 장비임대서비스의 경우는 '96년부터 개방될 것이며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상 외국인 활동에 현재 법령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UR/서비스협상에서 제약이 없는 분야로 양허되었다.

기타 엔지니어링활동은 외자도입법이 허용하는 한 과학기술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활동주체 신고를 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업 영위가 현재 가능한 상태이다. 사업서비스 중 건설관련 서비스의 최종 양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서비스의 모든 양허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건설관련 서비스의 최종양허안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건축설계서비스 [8671]	1) 상업적 주재 필요 2) 없 음 3)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한국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에는 한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설립 가능함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 음 2) 없 음 3) 없 음 4) 없 음 <추가약속> 1), 2), 4) : - '96.1.1부터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 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 허용 - 외국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6개 건축사 시험과목중 건축법규와 건축설계에 대한 시험만 합격하면 한국건축사 자격취득 가능
엔지니어링서비스 [8672]	1) 없 음 2) 없 음 3) 없 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 음 2) 없 음 3) 없 음 4) 없 음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8673]	1) 없 음 2) 없 음 3) 없 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 음 2) 없 음 3) 없 음 4) 없 음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서비스[8673]	1) 없 음 2) 없 음 3) 없 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 음 2) 없 음 3) 없 음 4) 없 음
건설기계 및 장비 임대서비스 [83107]	1)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제한없음 2)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제한없음 3)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제한없음 4)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제한없음. 2)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제한없음. 3)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제한없음. 4) 1996.1.1.까지는 Unbound 그 이후는 제한없음.

제한 사항으로는 외국인 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 외국인 상업적 주재(자회사, 합작회사, 지사, 사무소)에 대한 제한,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 서비스 교역에 수반되어 이동이 허용되는 인력의 범위에 대한 제한 등을 명시하였다.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특기사항은 수정양허안에서 임원(executive),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외에도 양허협상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sole representer(임원 또는 상급관리자로서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을 맡은자), service seller(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여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자)의 개념을 수용하였다 것이다.

(2) 정부조달건설시장 개방내용

정부조달협상의 대상은 중앙정부와 준정부기관의 물품조달중 13만 SDR을 초과하는 계약이 적용대상이며 서비스와 수도, 전기, 운송 및 통신 부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시장개방협상에서는 협정조문의 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의 대상기관, 계약금액을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건설을 포함한 서비스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협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장개방 주요내용

구 분	양 허 기 관	양 허 범 위
중 앙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개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대통령비서실·경호실·비상계획위원회 등 4개 안보 관련기관 제외 - 국립대학 및 부속병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품(13만 SDR이상) ◦ 서비스(13만 SDR이상) ◦ 건 설(5백만 SDR이상)
지 방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시 및 9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제외 - 하급자치단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품(20만 SDR이상) ◦ 서비스(20만 SDR이상) ◦ 건 설(1천5백만 SDR이상)
기 타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한국통신등 23개 정부투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전 : 중전기품목 제외 - 한국통신 : 통신망장비 및 통신제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품(46만 SDR이상) ◦ 서비스(미양허) ◦ 건 설(1천5백만 SDR이상)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서 건설의 여덟 분야중 운전자 땅린 장비임대를 제외하고 정지작업, 건축, 토목, 조립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마감공사 등 총 일곱개 분야의 공공건설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양허대상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셋으로 분류된다.

각 양허대상기관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안기부,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비상계획위원회 등 4개 안보관련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 15개 시·도, 한전, 한국통신 등 23개 정부투자기관이 모두 개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한전,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조달협정은 '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신규가입국인 한국은 1년의 유예를 받아 '9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건설시장은 97년 1월 1일을 통해서 개방되게 되었다.

다. 외국의 건시장 개방내용

(1) 주요국의 서비스협상 건설부문 양허안

미국은 건설과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해양준

설작업 제외)에 대해 시장접근이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미시간주에서 수행되는 공사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상업적 주재와 같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원(Officer or partner or director)의 3분의 2이상이 미시간주가 요구하는 자격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또 아칸사스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는 건축사 자격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건축설계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과 해외소비에 있어서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자연인의 주재에 있어서도 상업적 주재요건이 부과된다.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양허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의 건설관련 제도의 투명성 결여와 지나친 관행에의 의존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를 보장받기 어려운 면이 많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

는 47개 都道府縣과 12개 주요도시가 발주하는 24억 3천만엔이상의 공공공사입찰에서 일정액 이하의 가격을 써낸 업체를 제외하는 현행 최저제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업체를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요건 설정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C(European Community)의 양허안 list는 공통제한 사항을 밝히고 각 서비스 부문별로 양허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개방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EC의 양허안은 아직 EC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서비스 부문별로 각종 표준의 통일, 전문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의 진행에 따라 그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양허내용에 그러한 점을 밝히고 있다.

EC는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CPC5111(토지측량작업)의 국경간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그리스에서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주재에 국적의 제약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주요국의 정부조달협상 양허내용

(단위 : 1만 SDR *)

국 가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기 타 공 공 기 관		
	물 품	서 비 스	건 설	물 품	서 비 스	건 설	물 품	서 비 스	건 설
한 국 ¹⁾	13	13	500	20	20	1,500	45		1,500
미 국 ²⁾	13	13	500	35.5	35.5	500	40	40	500
EC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 본 ³⁾	13	13(45)	450	20	20(150)	1,500	13	13(45)	1,500
카나다 ⁴⁾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스위스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오스트리아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노르딕3국 ⁵⁾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홍 콩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이스라엘	13	13	850	25	25	850	35.5	35.5	850

주) 1) 518 제외

2) 한국에게는 지방, 기타 공공기관 공사중 1천5백만 SDR 이상의 공사에만 협정 적용

3) 서비스중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팔호안의 양허하한 적용

4) 준설, 교통부 공사는 제외

5)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1 SDR은 약 1,100원(94년 2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과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주재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뿐이다.

(2) 주요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내용

중앙정부의 건설공사 하한금액은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은 5백만SDR이상이며 지방정부공사와 기타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1천5백만SDR이상으로서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보다 하한금액상으로 볼 때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정부조달협상에서의 각국의 양허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설시장개방과 함께 정부는 국내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오고 있다. 제도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 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입찰 및 계약제도

외국건설업체가 국내건설시장에 참여할 경우 이를 국내 신규건설업체처럼 도급한도액 산정과 동일하게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을 도급한도액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외국업체가 국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자본금을 처음부터 크게 하거나 국내 건설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실적을 쌓기 위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일본도 이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 하여 도급한도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해온 바 있다.

건설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도급한도제도의 대체안으로 사전자격심사제도(이하PQ)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입찰제도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격외에 공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실태, 공사 안전 성적 등과 같은 비가격요소도 입찰결정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급한도제도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PQ제도는 먼저 입찰자의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가장 효율적인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입찰제도의 골격을 이루어온 도급한도제도를 단시간에 폐지하고 PQ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PQ제도로의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도급한도액에 따라 편성되는 도급군을 세분화시키고 동시에 도급한도액 산정을 공종별(토목과 건축)로 구분하여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며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급한도액을 산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개방과 함께 들어오게 될 외국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PQ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100억이상의 14개 공종의 대형공사부터 PQ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93년에 서해대교 공사의 입찰을 비롯해 여러 공사들을 PQ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건설업체의 PQ제도의 경험 기회와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조치는 시공여건 등 당해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밝은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들보다 수주경쟁에 우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자격심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영국의 PSA(Property Service Agency)와 같은 정보은행(data

bank)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중심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은행의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1993년말부터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가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가심사제의 운영상 나타난 입찰부조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액보증금납부를 강화하고 선금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보완조치도 단행하였다. 그러나 100억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가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개방에 대응한 국내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턴키입찰확대를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우선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상 즉, 대형공사의 범위를 3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 현실화하였는데 이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될 수 있으면 턴키 또는 대안입찰로 발주하겠다는 정부의 의사표명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턴키는 국내건설업체의 CM(Construction Management)능력을 제고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994년부터는 100억원이상 PQ실시 정부공사 입찰에 하도급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업체간의 원하청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장개방과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을 특히 정부조달 협정의 발효에 대응하여 반영시키기 위해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으로 개정하여 95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주공이나 도공과 같은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건설업체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게 될 정부기

관들도 개방에 대응하여 PQ등의 업체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계약특수조건, 공종별 표준시방서 등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 상관행에 부합하는 투명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면허제도

1994년부터 외국의 100% 출자 현지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주기를 단축하거나 외국업체의 면허신청에 대한 특례규정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1993년 12월 국회 건설업법 개정으로 면허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어 외국업체가 언제든지 우리나라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이 아니더라도 면허주기가 단축된다면 면허발급년도에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의 신청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면허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술자 등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는 이점도 있다. 한편 면허갱신 주기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4에서는 자본금, 기술사 등의 면허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외국업체의 면허요건 충족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일본과 같은 경영자, 기술자에 대한 특인절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외국지사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본사의 제반요건을 면허요건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또는 면허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 기술개발지원제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건설기술력 제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기술개발지원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건설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건설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93년부터 '97년까지 3천3백66억원을 투입하는 건설기술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16개 대형연구사업과 15개 중요요소 연구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건설부 주도하에 산·학·연·관의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는 총 3천3백66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이

자금은 정부에서 1천1백19억원, 산하공사 5백 24억원, 민간 1천7백23억원 등으로 조달케 된다.

이밖의 기술용역의 입찰방법을 개선하고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보호를 확대하며 기술개발보상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술의 데이터베이스화로 기술정조 지원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라. 감리 및 보증제도

감리제도의 개선은 건설시장개방과 더불어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내감리 능력의 제고와 감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감리기능 인력의 양적·질적 양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93년 1월부터 10년 이상 현장 경험기사도 감리책임자의 자격을 허용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 국내 감리사장의 조기개방을 실시하여 국제경쟁을 통한 국내업체들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즉, '94년부터 외국업체가 100% 단독투자하여 감리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감리시장을 개방하였다.

감리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설질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감리보수 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감리보수를 현실화하였고 예산편성상 감리비목을 신설하여 감리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리권한의 강화를 위해 시공과 정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때 감리자가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공사중지 명령권과 재시공 명령권을 부여하였고 또 기성고 및 준공 검사권도 감리자에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공공사에 비해 그동안 부실감리가 더 만연되었던 민간건축공사의 감리영역도 확대하였고 그 업무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권한강화와 함께 감리책임의 강화도 도모하였다. 즉 부실감리가 드러났을 때의 벌칙을 강화하여 부실감리업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 발생시 그 손상책임을 위한

공체조합기능을 갖춘 감리협회를 결성하여 기존의 감리협의회를 대신하여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개방과 관련해서 건설보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건설업체의 국내건설 면허취득시의 조합출자 문제이다 협상 타결전에 이미 미국과 EC는 강제조합출자규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실제로 외국건설업체가 국내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에는 현실적인 문제의 제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외국업체에 대해서만 조합의 출자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외국건설업체의 신규보증수요를 수용할 필요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건설업체의 우리나라시장 진출현황

우리나라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외국건설업체의 시장진출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건설업체들이 기술적 우위와 전문성을 무기로 상당히 활발한 국내시장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미즈, 후지다, 마에다 등이 이미 연락사무소, 법인을 설치한 데 이어 가지마, 다이세이, 하자마구미 등 10여개 대형건설업체들이 국내시장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의 상지텍솔 메나드사 등 3개사, 미국의 아이코스사, 스위스의 VSL사 등은 국내에 진출한 상태이다.

이와같이 국내건설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건설업체는 약 40~50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진출유형은 주로 국내합작회사와의 협작을 통해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96년 일반건설시장의 개방을 계기로 이와 같은 외국건설사들의 진출사례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